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정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에 관한 연구

— 최근 고등법원 판결 2건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박애자\* · 김순용\*\*

---

|| 목 차 ||

---

I. 서 론	87	IV. 쟁점 판결의 심층 분석 및 비교	103
II.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적 심층 분석	90	V. 규범적 평가 및 개선방안 : ‘보전(정산)’의 법적 성질 재정립	113
III. 2017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의 경과와 규범적 쟁점	95	VI. 결 론	121

---

---

\* 주저자 : 경영학박사, 세무사

\*\* 공동저자 : 평택대학교 부교수

\*\*\* 투고일 : 2025. 12. 30. 1차수정일 : 2026. 1. 22. 게재확정일 : 2026. 2. 5.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정산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논쟁을 다룬다. 특히 최근 서울고등법원(2024누57516)과 수원고등법원(2023누15045)이 유사한 쟁점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린 원인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해 과세표준, 에누리, 제3자 지급 대가의 개념 체계를 정리하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법리 및 2017년 개정 법령체계를 중심으로 하급심 판결을 비교·분석하여 해석론적 관점에서 현행 과세 논리의 한계를 진단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에누리(할인)인가, 판매장려금(비용)인가’라는 이분법적 논의를 탈피하여, ‘대가의 귀속과 회수(Recoupment)’라는 실질적 관점을 분석의 틀로 삼는다. 분석 결과, 두 판결의 결론 차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거래 구조 내 ‘비용 부담의 주체’와 ‘정산의 직접성’이라는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의 복잡한 정산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정산 외형이 아닌 ① 거래 연동성(Linkage), ② 금액 대응성(Correspondence), ③ 반환 연동성(Refundability) 등 ‘대가회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능적 기준을 제안한다. 아울러 2017년 개정 시행령은 새로운 과세 대상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모법의 포괄적 과세표준 개념을 구체화한 ‘확인적 규정(Confirmative Regulation)’으로 해석해야 함을 논증함으로써, 조세 중립성과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합리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 **주제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마일리지, 에누리, 제3자 보전, 대가회수성, 확인적 규정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유통·서비스 산업에서 마일리지, 포인트, 상품권(이하 법령상 용어인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멤버십 제도는 단순한 판촉 수단을 넘어 기업의 핵심적인 마케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sup>1)</sup> 특히 다수의 계열사나 제휴사가 참여하는 통합 멤버십 제도가 보편화되고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층적 제휴 구조가 심화되면서,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 등을 교차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금(Settlement)’의 세무상 처리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첨예한 대립 영역이 되어왔다.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9)은 포인트 사용분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였다.<sup>2)</sup> 그러나 정부는 201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규정(제61조)을 신설함으로써 과세 논리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sup>3)</sup>

문제는 2017년 법령 개정 이후에도, 복잡한 제휴 정산 구조 하에서 발생

---

1) 우리나라의 마일리지 관련 부어액은 2019년 12월말 현재 2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이호섭·박훈,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에 관한 소고”, 『조세와 법』 제13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2020, 207면].

2)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가 2차 거래에서 사용될 때, 그 공제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2017. 4. 1. 시행).

하는 금전의 성격을 두고 해석상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은 유사한 ‘제3자 적립 포인트 정산’ 사안에 대하여, 각각 ‘에누리의 본질’과 ‘시행령의 문언’을 중시하며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sup>4)</sup> 이러한 사법적 판단의 불일치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세 중립성과 거래단위 과세원칙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정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의 적법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와 2017년 개정 법령의 규범적 관계를 분석하고, 최근 엇갈린 하급심 판결의 논리적 구조를 해부하여, 현대적 정산 시스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sup>5)</sup> 이후 발생한 제3자 마일리지 등에 대한 정산분 과세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에누리, 제3자 지급 대가의 개념 체계를 고찰한다.<sup>6)</sup> 둘째, 판례 분석 방법으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2017년 개정 법령 하에서의 서울고등법원(2024누57516) 및 수원고등법원(2023누15045) 판결과 비교·검토한다. 셋째, 해석론적 접근을 통해 현행 과세 논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가회수성(Recoupment of Consideration)’에 기초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안한다.<sup>7)</sup>

---

4)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7516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3누15045 판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제6호.

6)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주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sup>8)</sup>이나, 2017년 법령 개정 전후의 입법적 타당성(위임입법 한계 등)을 논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sup>9)</sup>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쟁점 접근 프레임의 전환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라는 이분법적 논의를 탈피하여, ‘대가의 귀속과 회수(Recoupment)’라는 실질적 관점을 분석의 틀로 삼는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전통적인 조문 해석 중심 논문이라기보다, 판례 비교·평가를 통해 규범적 판단 기준을 도출하는 분석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최신 판례에 대한 실증적 비교·분석이다. 본 연구는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인 거래 구조(혼합형 통합정산 vs 순수 제3자 보전형)에 기반하여 심층 분석한다. 특히 두 판결의 결론 차이가 단순한 법 해석의 차이를 넘어, 정산금의 ‘대가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했음을 규명한다.

셋째, ‘기능적 과세 기준’의 구체적 제시이다. 현대의 비가시적(Invisible) 정산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① 거래 연동성, ② 금액 대응성, ③ 반환 연동성 등 ‘대가회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능적 지표(Checklist)

---

7) ‘대가회수성(Recoupment)’은 형식적인 자금의 수수 여부를 넘어, 공급자가 해당 거래를 통해 경제적으로 통상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가치를 확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을 의미한다.

8) 길용원·신만중, “마일리지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와 법』 제9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2016, 71~113면; 이진오, “2016년 조세판례 회고”, 『조세논총』 제2권 제3호, 한국조세법학회, 2017, 5~57면.

9) 이호섭·박훈, 앞의 논문, 169~211면; 박종우·윤태화,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7권 제3호, 한국조세연구소, 2018, 41~98면 등.

를 제안한다. 이하에서 ‘대가회수성’은 (i) 판례 비교의 공통 분석 기준이자, (ii) 시행령 해석의 한계를 검토하기 위한 잣대이며, (iii) 향후 해석·입법론적 기준으로 기능하는 개념으로 일관되게 사용된다.

## II.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sup>10)</sup>의 법리적 심층 분석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의 구조적 특수성

이 사건은 대형 유통·서비스 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한 통합 멤버십제도 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분쟁이다.<sup>11)</sup> 핵심 쟁점은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 또는 증정상품권을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이다.

원고들(계열사)은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후 고객이 원고들 또는 다른 계열사의 영업점에서 2차 거래를 할 때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계열사들 사이에는 포인트(및 증정상품권) 사용분과 관련한 통합 정산 약정이 존재하여, 일정 기간 단위로 사용분을 상호 정산금으로 수수하였고, 편의상 특정 법인(판결문상 롯데카드)이 정산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sup>12)</sup>

10)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11)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일명 ‘롯데 통합포인트 사건’).

12)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 참조.

원고들은 당초 쟁점금액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예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쟁점은 (i) 포인트 사용에 따른 ‘대금 공제’가 법상 예누리액인지, (ii) 계열사 간 정산금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iii) 시행령상 ‘마일리지 조항’(구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이 법률상 예누리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로 구조화된다.

##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체계의 규범적 검토

### 가. 법 제13조(현행 제29조)의 다층적 구조와 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공급가액(과세표준)의 기본 범위를 정하면서(제1항),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예누리액 등을 열거하고(제2항), 반대로 장려금 등 공제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한 다음(제3항), 그 밖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다(제5항).<sup>13)</sup>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 체계를 전제로,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예누리액은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sup>14)</sup>

13)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1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판결.

### 나. 시행령 규정<sup>15)</sup>(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 제48조 제13항)과 법률 체계의 관계

구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구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sup>16)</sup>

이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구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이른바 ‘마일리지 조항’)이 존재하여 문언상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방향의 규정이 놓여 있었다.<sup>17)</sup> 다만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가 과세표준의 기준·범위와 에누리액 등 제외항목을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는 그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제13조 제5항)을 전제로 하였다.

그 위에서 다수의견은, 구 시행령 제48조 제13항(마일리지 조항)이 ‘마일리지’의 개념이나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만으로 마일리지 상당액을 언제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본 판결의 핵심은 마일리지 조항만을 근거로 법률이 정한 에누리액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이 법률 체계 내에서 가지는 해석상의 한계를 밝힌 데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sup>18)</sup>

1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52조 제2항.

17)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2010. 2. 18. 신설).

18)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 3.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논리

#### 가. 포인트의 법적 성질

다수의견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를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2차 거래에서 그 점수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현금 등으로 결제하는 구조는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포인트 상당 공제분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논리는 단일 사업자 구조뿐 아니라, 여러 사업자가 통합 포인트 제도를 공동 운영하여 고객이 교차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되었다.<sup>19)</sup>

#### 나. 계열사 간 정산금의 실질

과세관청은 계열사 간 정산금을 근거로 포인트 사용액을 ‘제3자가 지급하는 대가’로 평가하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다수의견은 이를 배척하였다. 다수의견은 정산금이 특정 2차 거래와 직접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된 포인트 적립·사용을 전제로 한 계속적 정산관계 속에서 손실을 전보하고 통합 운영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sup>20)</sup> 따라서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계열사 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산사정만으로 포인트 공제분을 공급가액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9)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20)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법원은 정산금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이 아닌, 공동 마케팅 비용의 분담이나 손실의 보전 성격으로 파악하였다.

#### 4. 반대의견 및 보충의견의 대비 구조(요지)

반대의견은 ‘금전 외의 대가’ 규정을 원칙으로 보고, 포인트가 정산 구조상 사업자에게 금전적 가치 있는 권리로 실현된다는 점을 들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거래단위 과세 원칙상 1차 거래(적립)와 2차 거래(사용)를 통틀어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sup>21)</sup>

반면 다수의견 보충의견은, 고객이 사전 약정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받았다면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그 ‘지위’의 금전적 가치성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1·2차 거래를 통틀어 보면 포인트는 1차 거래에서 수령한 대가의 일부가 충당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2차 거래에서 포인트 사용분을 별도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경우 공급가액이 중복하여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sup>22)</sup>

#### 5. 소 결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합 포인트·증정상품권 제도에서, 고객이 2차 거래에서 포인트(또는 증정상품권)로 대금을 공제받는 구조가 사전 약정된 결제조건에 따른 공급가액의 직접 공제에 해당하여 에누리액으로 평가될 수 있고, 계열사 간 정산금은 원칙적으로 개별 2차 거래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행령상 마일리지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

21)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대법관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욱).

22)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김용덕·이기택).

이 정한 과세표준·에너지 체계에 비추어 그 조항만으로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취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구체적 사실관계(통합 운영, 정산 구조, 포인트·상품권의 기능 및 관리 방식)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향후 비용부담 구조·정산 방식이 상이한 다양한 포인트 제도에 동일한 결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범적·사실적 검토가 요구된다.

### Ⅲ. 2017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의 경과와 규범적 쟁점

#### 1. 이론적 배경 : 매출에너지와 판매장려금의 구별 난제

##### 가. 부가가치세법상 이분법적 과세 체계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sup>23)</sup>에서 ‘매출에너지’는 재화·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반면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공급대가 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2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貨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나.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과 구별의 모호성

문제는 현대적 마케팅 기법의 발달로 두 개념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2021)<sup>24)</sup>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매출에누리과 판매장려금은 모두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구매를 유인하고 사실상 가격을 인하하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지급 조건, 결제 방식(직접 차감 vs 사후 지급)의 형식적 차이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반대로 갈리는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과세관청과의 해석상 다툼을 유발하여 막대한 납세협력비용(가산세, 불복비용)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어왔다.

### 다.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장(2016. 8. 26. 선고)

이러한 모호성 속에서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은 1차 거래 적립금이 2차 거래에서 사용될 때, 이를 판매장려금 성격이 아닌 ‘매출에누리’로 확정하였다. 이는 경제적 실질이 가격 할인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기존에 이를 판매장려금 유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해오던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무너진 과세 경계를 재설정하고, 마일리지 유형(자기적립 vs 제3자적립)에 따른 정교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 2. 2017. 2. 7. 시행령 개정

### 가. 종전 규정의 정비와 신설 규정의 구조

정부는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조문화하였

24)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IV』, 2021, 273~274면.

다. 다만, 마일리지 관련 핵심 규정(제61조 제1항 제9호·제10호 신설<sup>25)</sup> 및 종전 제61조 제4항 삭제)은 2017. 4. 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규정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마일리지 등’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구매실적에 따라 별도 대가 없이 적립되는 마일리지·포인트 등과, 구매실적에 따라 무상 교부되던 전산시스템 등으로 일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을 ‘마일리지 등’으로 포섭하였다.

---

2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填)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제10호.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둘째, ‘적립 주체(귀속)’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이원화하였다. 신설된 제61조 제1항 제9호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제10호 제외) 공급가액을 원칙적으로 (i)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ii)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 결제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의 합으로 정하였다.

여기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은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을 의미하고, 다수 사업자가 적립·사용 가능한 통합형 마일리지 등의 경우에는 (i) 고객별·사업자별 적립 및 사용 실적의 구분 관리 등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ii)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한다.

셋째, 보전이 없거나(또는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예외 상황에 대한 규율을 별도로 두었다. 제61조 제1항 제10호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라도, (i) 제3자 보전 없이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ii)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이유에서도 이러한 체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즉, (i) 당초 공급자에게 사용된 마일리지·상품권 결제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ii) 마일리지·상품권 결제분 중 사업자가 실제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과세표준을 보완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표 1>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b>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b>	
<p>가. 개정취지</p> <p>○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p> <p>나. 개정내용</p>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p> <p>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p> <p>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 관리하는 상품권</p>	<p><input type="checkbox"/>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p>
<p>○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p> <p>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p>	<p>○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p>
<p>○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자기 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받을 금액</p> <p>－ 마일리지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p>	<p>○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p> <p>－ 마일리지 관련 규정 이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p>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 4.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문별 개정내용, <https://taxlaw.nts.go.kr>(검색일 : 2025. 12. 29.).

나. 개정 시행령의 규범적 평가와 한계

이 개정은 (i) 구매실적에 따라 별도 대가 없이 적립되는 포인트·마일리지 및 일정 요건의 상품권을 ‘마일리지 등’으로 포섭하고, (ii)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과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 마일리지 등(통상 제3자 적립·보전형)을 구분하여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달리 정함으로써, 마일리지 등 결제분에 대한 공급가액 포함·제외 기준을 유형별로 명확화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의 사용분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반면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 마일리지 등의 사용분은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과세표준 산정틀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체계화가 곧바로 규범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17. 4. 1. 시행 시점에는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이 마일리지 등과 관련하여 과세표준 포함·제외의 기준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시행령이 ‘적립 주체’와 ‘보전액’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과세대상을 세분화하고, 제3자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와 관련된 비판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와 같은 시기적·규범적 긴장은 후일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배경으로도 지적될 수 있다.

### 3. 규범적 공백 기간(2017. 4. 1. ~ 12. 31.)의 헌법적 쟁점

#### 가. 쟁점의 소재 : 법률 개정 지체와 시행령의 선행

2017년 2월 개정된 시행령(제61조)은 4월 1일부터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의 결제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모법(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개정은 같은 해 12월 19일<sup>26)</sup>에야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발생한 약 9개월간의 ‘규범적 공백 기간’ 동안, 과연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가 가능한지가 헌법적 쟁점이 되었다.

#### 나. 납세자의 주장 : 조세법률주의 위반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이탈

납세자(원고) 측은 에누리액의 본질적 개념은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관련 대법원 판결이 포인트 사용분을 에누리액(과세표준 제외)으로 확정할 이상, 법률의 명시적 변경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이탈한 무효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백기 동안의 과세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다. 사법적 평가 : 부가가치세 본질론과 입법 형성의 존중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수원고등법원 2023누15045 등)은 규범적 공백기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당 법리는 과세표준의 본질과 행정입법의 기능을 근거로 시행령의 규범적 효력을 긍정하는데,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

26)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제6호.

### (1) 과세표준의 포괄성과 확인적 규정의 성격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이 과세표준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법률상 과세표준 규정은 본질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이며,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이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새로운 과세 대상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라는 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본다.

### (2) 행정입법의 구체화 필요성과 탄력성

현대 마케팅 기법의 발달로 마일리지, 포인트, 사이버머니 등 거래 형태가 급변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마일리지 과세의 기본적인 요건은 법률이 정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공백기 이전의 구 시행령만으로는 다양한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적절히 규율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제3자 보전 여부 등)을 마련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형성으로 평가된다.

### (3) 거래의 분리와 조세 중립성

나아가 법원은 1차 적립 거래와 2차 사용 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분리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sup>27)</sup>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예누리로 인정할 경우, 사업자가 지출하는 판매장려금 등 비용 공제 항목과의 구별이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시행령이

27)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

‘제3자 보전’이 있는 경우를 예누리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거래세로서 부가가치세의 성격과 조세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으로 해석된다.

#### (4) 소결 : ‘창설’인가 ‘확인’인가의 해석론적 분기

결국 공백기의 헌법적 쟁점은 시행령의 개정을 ‘새로운 과세 기준의 창설(납세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급가액 개념의 구체적 확인(과세관청)’으로 볼 것인지의 대립으로 요약된다. 최근의 사법적 판단은 공백기 과세의 근거를 둘러싸고 일의적으로 수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sup>28)</sup>

## IV. 쟁점 판결의 심층 분석 및 비교

### 1. 분석의 틀과 의의 : 동일 쟁점, 상반된 결론

본 장은 2017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제3자 적립 마일리지의 과세표준 포함 문제를 다룬 두 고등법원 판결을 비교·분석한다. 두 판결은 모두 ‘제3자 적립 포인트 사용’과 ‘정산금 수수’라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음에도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두 판결의 결론 차이는 단순한 법령 해석의 대립이라기보다, 거래 구조와 비용 부담의 귀속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서울고등법원은 통합정산 구조하에서 정산금의 개별 거래 대가성을 부정한 반면, 수원고등법원은 제3자 전액 보전 구조를 전제로 정산금의 대가성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

28)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68531 판결은 모범 위임 범위 내라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

〈표 2〉 두 고등법원 판결의 비교 분석

구 분	서울고등법원 (2024누57516)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45)
쟁점 구조	혼합형 통합정산 (자기적립 + 교차사용 혼재 / 상계정산)	순수 제3자 보전형 (제휴사 전액 비용부담 / 전액 보전)
포인트 성격	할인 약정의 이행 (에누리 성격 중시)	제3자가 지급하는 대가 (결제수단 성격 중시)
정산금 판단	개별 거래와의 대가성(Linkage) 미약	공급대가의 직접적 보전 (Recoupment) 명확
법령 해석	법률(에누리) 우위 → 시행령 축소해석	시행령(보전액) 존중 → 위임입법 존중
결론	과세표준 제외 (납세자 승)	과세표준 포함 (과세관청 승)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결론의 차이가 단순한 법령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부가 선택한 해석론적 방법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 분석을 시도한다.

- ① 규범의 위계 질서 : 상위법인 법률의 ‘에누리 규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과세 산정 규정’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sup>29)</sup>
- ② 거래의 실질 해석 : 포인트 사용과 정산을 ‘할인 약정의 이행’으로 보는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대가의 보전(결제)’으로 보는가?<sup>30)</sup>
- ③ 대가의 회수 구조 : 거래 구조상 ‘실질적인 비용 부담의 주체’와 ‘정산의 직접성’이 정산금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sup>31)</sup>

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 같은 영 제61조.

30)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7516 판결.

31) 수원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3누15045 판결.

## 2. 사실관계 및 쟁점의 구조적 차이 : 비용 부담의 귀속

두 사건은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나,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경제적 비용 부담의 주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 가. 서울고등법원(원고 승소) : ‘통합정산형(혼합형)’ 구조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거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고객의 포인트 사용분을 적립처에 따라 자기적립·자기사용분과 교차사용분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여기서 교차사용분의 경우, 원고는 제휴 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사용액을 포함한 합계금을 정산받는 외형을 띤다.

2017년 2월 7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공급가액을 ‘마일리지 등 외의 결제금액 +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결제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쟁점은 교차사용분에 대한 카드사의 정산금이 이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자기적립·자기사용분을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른 에누리(공급가액 제외)로 보았고, 교차사용·정산분의 경우 정산금을 제휴계약 기반의 통합 정산 흐름으로 파악하여 개별 거래의 직접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에서도 교차사용분을 에누리로 취급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나. 수원고등법원(원고 패소) : ‘제휴사 전액부담-전액보전’

수원고등법원 사건은 거래구조 자체가 서울고법 사건보다 단순하다. 즉, 2차 공급자인 원고가 결제수단으로 받은 포인트가 원고가 적립해 준 포인트가 아니라 제휴사(B사)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적립해 준 포인트이고, 2

차 거래 이후 원고가 그 사용액 상당을 B사로부터 전액 정산(보전)받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2017년 개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예정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 결제분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쉬우며, 수원고법은 바로 이 점(원고가 적립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전액 보전받는 구조)을 중시하여 공급가액 포함(원고 패소)으로 귀결된다.

### 3. 핵심 쟁점별 법리 비교 분석

가. 규범 간 충돌의 해석론 : ‘에누리 우선설’ vs ‘시행령 구체화설’

#### (1) 서울고등법원(법률 우위)

서울고법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제29조 제5항 제1호)’ 규정을 흔들릴 수 없는 상위 규범으로 전제한다. 개정 시행령이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에누리(공급가액의 직접 차감)에 해당한다면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합치적으로 축소 해석(Restrictive Interpretation)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에누리의 본질은 침해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sup>32)</sup>

#### (2) 수원고등법원(위임입법 존중)

반면 수원고법은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일리지의 유형과 거래 형태가 다양하므로, 개정 시행령은 입법자가 재량으로 과세 기준을 구체화(Concretization)한 정당한 위임입법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시행령의 문언대로 제3자 보전이 있는 경우 과세하는 것은 모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다.<sup>33)</sup>

3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3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

## 나. ‘결제’와 ‘보전’의 실질에 대한 해석

### (1) 서울고등법원(실질설 - 할인 약정의 이행)

서울고법은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사용을 ‘대금 결제’가 아닌 ‘사전에 약정된 할인권의 행사’로 규정한다. 또한 정산금은 개별 2차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 장기간의 제휴계약에 따른 ‘별도의 정산 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2차 거래와의 대가성(보전)을 부정하였다.<sup>34)</sup>

### (2) 수원고등법원(형식설 - 대가의 수령)

수원고법은 포인트 사용을 실질적인 ‘결제 수단(Payment Method)’으로 인식한다. 제휴계약의 주된 목적 자체가 고객의 포인트 사용분을 제3자가 대신 갚아주는 ‘대금 정산’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가 수령한 정산금은 명백히 재화 공급의 대가를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것<sup>35)</sup>이므로, 개정 시행령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sup>36)</sup>

## 다. ‘금전적 가치’ 판단과 비용 부담의 귀속

### (1) 서울고등법원(통합정산형 : 자기적립 할인 + 교차사용 정산)

서울고법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가”를 이분법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포인트 제도가 ‘자기적립 · 자기사용’과 ‘교차사용 · 정산’이 결합된 통합정산형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정산금의 법적 성격이 개별 2차 거래의 공급대가(또는 제3자 지급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따진

---

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 수원고법 판결.

34)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7516 판결.

35) 수원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3누15045 판결. 이유 1. 나. 3). 원고가 운영 · 관리하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고객들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대금 결제는 주로 타사 포인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물품 판매액 중 타사 포인트 결제금액이 93.2%,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6.8%이다.

36) 수원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3누15045 판결.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맹점)는 포인트 적립 단계에서 카드사와의 제휴에 따라 적립 관련 비용(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적어도 자기적립 포인트가 원고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범위에서는 고객이 대가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받는 것이 사전 약정된 할인(에누리) 실행으로 이해될 여지가 크다(이 경우 원고는 별도의 보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편 타 가맹점이 적립한 포인트가 원고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사용분을 포함하여 사후 정산을 받는 외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러한 정산금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해당 2차 거래에서 공급대가가 제3자로부터 보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정산금은 개별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보전하는 구조라기보다, 포인트 제도를 공동 운영하는 다수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통합정산 약정에 따른 계속적 정산관계의 산물로 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교차사용·정산이라는 사정만으로 포인트 사용분의 에누리(공급가액 직접 공제) 성격을 부정하거나 정산금 상당액을 곧바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2) 수원고등법원(비용 부담자 = 제3자)

수원고법 사안에서는 포인트 비용을 전적으로 제3자(B사)가 부담했다. 공급자(원고) 입장에서 타사 포인트는 B사에 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가치’를 지닌다. 수원고법은 이를 근거로 포인트가 단순한 에누리가 아니라 ‘금전적 가치 있는 대가’라고 판단하였다.<sup>37)</sup>

### 4. 판결 논리의 취약점(Vulnerability) 진단 및 비판적 검토

앞서 살핀 각 판결의 논리는 고유한 정당성을 갖지만, 상고심에서 주요

---

37) 수원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3누15045 판결.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리적 정합성 측면의 한계와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 가. 분석의 전제 : 법령·시행령·판례의 삼각 프레임과 논증의 딜레마

2017년 시행령 개정 이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표준 분쟁은 (i) 법률(제29조)의 원칙과 예외, (ii) 대통령령(시행령 제61조)의 구체적 산정 공식, (iii) 대법원 전원합의체(2015두58959)의 에누리 법리라는 세 가지 규범적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sup>38)</sup>

특히 시행령 제61조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는 ‘산정 공식(Formula)’을 명문화한 상황에서, 하급심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각 판결은 고유한 논리적 취약점을 노출하게 된다.<sup>39)</sup>

### 나. 서울고등법원 2024누57516 판결의 취약점

서울고법은 실질과세를 앞세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였으나, 명문 규정과의 충돌 및 논리적 비약의 위험을 안고 있다.

#### (1) 시행령상 ‘산정 공식’의 무력화와 체계 충돌

서울고법은 포인트 사용분을 에누리로 판단함으로써, 시행령 제61조가 명시한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합산한다”는 산정 규정의 규범적 효력을 형해화(形骸化)할 우려가 있다. 이는 법원의 해석이 법률이 위임한 ‘가액 산정 방식’을 무력화함으로써, 입법자의 구체적 위임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낳을 수 있으며, 행정입법의 구체적 기준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38)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누리 법리 및 정산금 비대가성 논리)과 2017년 개정 시행령(보전액 포함 구조)의 교차(삼각 프레임).

39)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 ; 같은 영 제61조.

### (2) ‘직접 깎아주는 금액’ 문언 요건과의 괴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한다. 제3자 보전이 결합된 거래에서 공급자는 경제적으로 대가를 전액 회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자 관점의 직접 감액’으로 의제하는 것은 “보전액이 지급되는 한 공급자가 받는 경제적 대가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배치되며, 문언의 한계를 넘어서는 확장 해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sup>40)</sup>

### (3) 전원합의체 법리의 기계적 원용

개정 시행령이 ‘보전액 포함’을 명문화한 현 시점에서, 법령 개정 전의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정산금은 대가가 아니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입법적 결단에 의한 규범 환경의 변화”를 간과한 것이다.<sup>41)</sup>

### (4) 사실인정의 불확실성

정산금이 개별 거래와 무관한 통합 정산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 보전액의 발생 요건이나 정산 주기, 반품 시 처리 등에 관한 면밀한 심리가 부족하다면 심리미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5) 과세 베이스 침식의 위험

서울고법의 논리처럼 제3자 보전이 있음에도 이를 에누리로 인정할 경우, ‘과세 베이스 침식(Tax Base Erosion)’문제가 발생한다.<sup>42)</sup> 이는 조세 중립성을

4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41)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 개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42) 예컨대, 10,0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이 제3자 적립 마일리지 2,000원을 사용하여 8,000원만 결제하고,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2,000원을 보전받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 2,000원을 에누리로 보아 8,000원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면, 공급자는 실질적으로 10,000원의 대가를 획득했음에도 세금은 덜 내는 결과가 초래된다.

훼손하고 현금 결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제3자 보전이 결합된 거래에서는 ‘대가회수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 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45 판결의 취약점

수원고법은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였으나, 헌법적 원칙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1)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논란

시행령 제61조는 단순히 금액 산정 방식을 넘어, ‘제3자 보전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을 결정하는 본질적 과세 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는 법률이 정해야 할 납세의무의 요건을 하위법령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위반이라는 헌법적 원칙과의 긴장 관계에서 오는 비판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sup>43)</sup>

##### (2) ‘공백기(2017. 4. 1.~12. 19.)’ 적용의 위헌성

법률의 명시적 위임 근거가 마련되기 전인 공백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적으로 “법률의 위임 없는 시행령에 의한 과세”를 용인한 셈이 된다. 설령 이후 법률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공백기의 과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소급적 합헌화’를 허용하는 논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sup>44)</sup>

##### (3) 전원합의체 판결과의 정면 충돌

수원고법의 결론은 관련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과 배치된다. 사실관계의 차이나 규범 변경에 대한 정밀한 논증 없이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이유

43) 헌법 제59조 ; 헌법 제75조.

44)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7516 판결.

로 대법원 법리를 배척했다면, 법리오해의 위험이 크다.<sup>45)</sup>

#### (4) ‘보전받을 금액’의 명확성 문제

시행령은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sup>46)</sup> 그러나 과세 시점에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과세표준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 5. 소결 : 취약점의 교차와 대법원의 과제

두 판결의 비교는 단순한 승패의 기록이 아니라, ‘법률상 에누리 개념의 규범력(서울고법)’과 ‘시행령상 산정 공식의 구체성(수원고법)’ 간의 치열한 대립을 보여준다. 서울고법은 ‘경제적 실질’을 고수함으로써 시행령 무력화라는 체계적 부담을 안았고, 수원고법은 ‘입법적 결단’을 수용함으로써 위임입법 일탈과 공백기 과세라는 헌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결국 이 논쟁의 종착점은 대법원이 2017년 이후의 규범 환경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즉 “시행령이 법률상 에누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귀결될 것이다.

---

45)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 개정 시행령.

46) 개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본문.

## V. 규범적 평가 및 개선방안 : ‘보전(정산)’의 법적 성질 재정립

### 1. 문제의 재정의 : ‘할인’의 외관과 ‘대가의 회수’ 문제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대금 공제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가격의 할인”이라는 경제적 효과로 인식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비자의 주관적 체감 가격이 아니라, 각 사업자(공급자) 단위의 개별 공급거래에서 “대가가 어디로부터, 어떤 법률관계에 따라 공급자에게 귀속되었는지”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sup>47)</sup>

따라서 본 쟁점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에누리처럼 보이는가”의 현상론적 문제가 아니라, 포인트 차감액 상당이 정산(Settlement) 메커니즘을 통해 2차 공급자의 공급대가로 실질적으로 회수(Recoupment)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정산이 공급대와 무관한 별도의 법률관계(비용 분담, 제휴 수수료 조정 등)의 산물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sup>48)</sup> 이 관점에서 공급자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자기적립 포인트’는 에누리임이 명백하나, ‘제3자 적립 포인트’의 경우에는 정산금이 ‘제3자에 의한 대가의 대위변제(Subrogation)’ 기능을 수행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sup>49)</sup>

다만,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합 멤버십 내부에서 정산금의 개별 공급대가 회수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하거나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으로 이해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47)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48)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49) 개정 시행령.

전면 부정하거나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전제로 한 사실관계와 이후 등장한 거래구조 간의 차이를 구별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특히 제3자 보전이 2차 공급대가의 회수 기능을 명확히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리의 기계적 적용이 조세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sup>50)</sup>

## 2. 규범적 기준 : 거래단위 과세·조세중립성·예측가능성의 조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가 아닌 거래세로서, 다음 세 가지 규범적 요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sup>51)</sup>

첫째, 거래단위 과세원칙(Transaction Unit Principle) : 1차 적립거래와 2차 사용거래를 “경제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과도하게 통합하여 파악하면, 개별 사업자 단위의 과세표준 산정이 왜곡될 수 있다. 특히 다자간 제휴가 전제된 구조에서 거래의 통합 파악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sup>52)</sup>

둘째,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 : 동일한 가치의 재화를 공급하고 동일한 금전적 대가를 회수했음에도, 정산의 경로나 방식(직접 수령 vs 포인트 정산)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면, 이는 조세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비중립적 결과를 초래한다.<sup>53)</sup>

셋째, 납세자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 현대의 복잡한 정산 시스템하에서 “누가 보전하는지”가 개별 거래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정산의 외형(통합정산 여부 등)이나 회계 처리와 같은 형식적 표시

---

50) 김용원·신만중, 앞의 논문, 106면 참조.

5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8조(사업자등록).

5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8조(사업자등록).

53)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OECD Publishing, 2017, pp.29~33 ; 권형기·이정환,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하여”, 『조세학술논집』 제39권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23, 232면.

가 과세 결론을 좌우한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 위험이 발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sup>54)</sup>

### 3.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적용 한계 : 과세베이스 침식의 위험

관련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포인트를 “할인 약정의 수치화”로 파악하여 에누리로 인정하였다.<sup>55)</sup> 그러나 이 법리를 제3자 보전이 수반되어 대가가 회수되는 거래에까지 기계적으로 확장할 경우, ‘과세 공백’ 문제가 발생한다.<sup>56)</sup>

예컨대 1차 사업자 A가 적립해주고, 2차 사업자 B가 1,000원의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인트 200원을 차감(현금 800원 수령)한 뒤 A로부터 200원을 정산받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때 200원을 ‘에누리’로 보아 B의 과세표준을 800원으로 축소하면, 최종 소비자는 1,000원의 가치를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80원(800원 × 10%)에 그치게 된다. 이는 2차 사업자 B가 실질적으로 1,000원의 대가를 향유했음에도 조세 부담은 축소되는 결과를 낳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지출에 비례한 과세’라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시킨다.<sup>57)</sup> 따라서 제3자 보전이 결합된 교차사용 구조에서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포인트 = 언제나 에누리”로 일반화하기보다,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대가를 포기(비용 부담)한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유형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sup>58)</sup>

54) OECD, *op. cit.*, pp.25~26.

55)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56)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을 지지하는 견해로는 이전오, 앞의 논문, 39~40면.

57) 박종우·윤태화, 앞의 논문, 각주 61) 참조.

58) 개정 시행령.

#### 4. 개정 시행령의 규범적 정당성 : ‘확인적 규정’으로서의 성격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 개정 시행령(제3자 보전액 포함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새로운 과세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과세표준을 바로잡기 위한 ‘거래단위 과세의 정상화 장치’이자,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금전적 가치 있는 대가’의 범위를 구체적 거래 유형에 맞게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Confirmative Regulation)’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sup>59)</sup>

물론 시행령의 정책적 합리성이 법률 위임의 흠결(특히 공백기 과세)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라는 모법의 포괄 개념을 전제로, 대가회수형 정산에서는 시행령의 산정 공식을 합치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음을 규범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최근 하급심에서 쟁점이 ‘시행령의 무효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 정산금의 성격(보전액 해당성)’으로 이동한 것은, 이러한 규범적 정당성에 대한 사법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필요한 작업은 시행령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기준을 시장 현실에 맞게 정교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 5. 시장 현실의 반영 : 정산 구조의 비가시성과 ‘대가회수성’

현대의 제3자 적립 포인트 제도는 카드사 등 중개기관을 통한 ‘네트워크 정산(Clearing)’ 방식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간의 적립·사용 실적과

---

59) 현재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 참조. “위임입법(委任立法)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에 대한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내지는 특정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有機的) 체계적(體系的)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한다.”

수수료가 상계(Netting) 처리되므로, 개별 거래마다 보전의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성(Invisibility)’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가시성은 결제 인프라의 기술적 특성일 뿐, 정산금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본질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는가”가 아니라, “권리·의무 관계상 대가가 회수되는 구조인가”가 중요하다. 가시성이나 통합정산이라는 외형적 형식만으로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은 고도화된 현대 상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 6. ‘보전(정산)’ 개념의 기능적 재정립

따라서 제3자 적립 포인트 정산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능적 기준(Functional Standard)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한다.<sup>60)</sup>

- 대가보전형 정산(제3자 대가) : 정산금이 개별 2차 공급을 전제로 발생·산정되고, 그 결과 2차 공급자가 통상의 공급가액을 경제적으로 회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다. 이 경우 정산의 외형이 통합적이더라도 실질은 ‘제3자에 의한 대가 지급’이므로 과세표준 포함의 정당성이 강하다.
- 비대가형 정산(별도 거래) : 정산금이 개별 공급대가의 보전이 아니라, 제휴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독립된 급부관계(마케팅 용역 대가, 시스템 이용료 등)로 조직되어 있고, 거래의 취소·환불과 직접적인 연동성이 없다면, 이는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

60)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능적 판단모형은 대법원 2014두144 판결에서 명시한 ‘제3자 수수금의 대가관계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된 ‘보전액’ 산정 구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도출한 것이다.

## 7. 개선방안

### 가. 해석론(대법원 판단 기준)

향후 상고심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예누리 법리를 “포인트 사용은 언제나 예누리”로 일반화하지 말고, ‘자기 적립 또는 제3자 보전이 없는 거래’에 주로 적용되는 법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반면, 제3자 보전을 통해 대가가 회수되는 경우에는 ‘분리 거래 원칙’에 따라 보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베이스를 정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대가회수성’ 판단을 위한 기능적 기준(Checklist)

본 연구는 제3자 정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표를 제안한다.

- ① 거래 연동성 (Direct Linkage) : 정산금이 개별 재화용역의 공급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산정되는가? (단순한 포괄적 마케팅 지원금과 구별)
- ② 금액 대응성 (Correspondence) : 마일리지 등 차감액(할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급자에게 보전되는가?
- ③ 반환 연동성 (Refundability) : 매출 취소나 환불 시, 지급받았던 정산금도 반환하거나 차감되는 위험 부담이 존재하는가?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정산금은 명칭이나 지급 경로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로 보아야 한다.<sup>61)</sup>

---

61) 정다운 외 2인(2021)은 제3자 지급할인의 직접 공제의 범위는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정다운 외 2인, “제휴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21-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10면.

## 다. 기능적 기준의 구체적 적용 : 쟁점 판결의 재검토

앞서 제안한 ‘대가회수성 체크리스트(① 거래 연동성, ② 금액 대응성, ③ 반환 연동성)’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두 고등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에 구체적으로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규범적 결론이 도출된다.

### (1) 수원고등법원 사안(제3자 전액 보전형)

먼저, 논의의 선명성을 위해 전형적인 제3자 보전 구조를 띤 수원고등법원 사안부터 검토한다. 이 사안은 제휴사가 포인트 적립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사용 시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 ① 거래 연동성(충족) : 정산금은 개별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실적에 기반하여 산정되므로 개별 거래와의 연계성이 명확하다.
- ② 금액 대응성(충족) : 고객이 차감받은 포인트 1원당 제휴사로부터 1원의 정산금을 수령하므로(수수료 제외 전 총액 기준), 할인액과 보전액이 정확히 대응한다.
- ③ 반환 연동성(충족) : 매출 취소 시 포인트가 복구되고 정산금 지급 의무도 소멸하는 정산 구조를 갖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해당 정산금은 명백한 ‘대가의 회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수원고등법원의 판단은 본 연구의 기능적 기준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다.

### (2) 서울고등법원 사안(혼합형 통합정산)

이 사안은 ‘자기적립분’과 ‘교차사용분(제3자 적립)’이 혼재되어 있다. 이를 기능적 기준으로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

#### (가) 자기적립분 사용액

공급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므로 제3자로부터 유입되는 금액이 없다. 즉, ② 금액 대응성 요건(보전액의 존재)을 원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는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제3자 적립(교차사용분) 정산액

비록 통합정산 및 상계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거래 연동성(충족) : 통합 정산이라 하더라도, 그 정산의 기초 데이터는 ‘개별 가맹점에서의 타사 포인트 사용 실적’이다. 즉, 개별 거래가 없으면 정산금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동성이 인정된다.
- ② 금액 대응성(충족) : 가맹점 간 약정에 따라 사용된 포인트 가치만큼의 금전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것이 상계 후 차액 정산의 형태로 실현되므로 경제적 대응성은 유지된다.
- ③ 반환 연동성(충족) : 시스템상 거래 취소 시 정산 데이터 역시 수정·반영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통합정산의 외형에 치중하여 교차사용 정산분까지 에누리로 판단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기준에 따르면, 교차사용 정산분은 대가회수성이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즉, 서울고등법원 사안은 ‘자기적립분(제외)과 제3자 정산분(포함)’을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달리 판단했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3> 기능적 기준(Checklist)에 따른 쟁점 판결 적용 분석

구분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거래 구조	순수 제3자 보전형 (제휴사 전액 부담)	혼합형 통합정산 (자기적립 + 교차사용)
① 거래 연동성	(충족) 개별 사용분에 대해 건별 매칭 및 청구	(충족) 월 단위 정산이나, 산출 근거는 개별 거래임
② 금액 대응성	(충족) 1 : 1 전액 보전	(충족) 약정된 비율에 따라 보전(교차사용분 한정)
③ 반환 연동성	(충족) 취소 시 정산금 반환(상계)	(충족) 반품 시 정산 내역 수정(차감)
종합 판단	대가회수성 인정 (O)	부분적 대가회수성 인정 (△)

## 8. 소 결

결론적으로 제3자 적립 포인트 정산분 논쟁의 본질은 ‘할인의 외관’이 아니라 ‘대가의 귀속과 회수’에 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통합적 에누리 접근은 제3자 보전이 결합된 구조에 일반화될 경우 조세 중립성 훼손과 과세 형평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개정 시행령이 채택한 “보전액 포함” 구조는 규범적으로 합리적 정당성을 갖는다.

다만 오늘날 카드사 제휴 포인트 생태계에서는 보전 주체의 비가시성이 일반적이므로, 형식적 표지에 의존하기보다 ‘대가회수성’ 중심의 기능적 기준으로 ‘보전’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는 판례의 기준 정립과 행정·입법적 유형화가 병행될 때 비로소 조세중립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VI. 결 론

###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통합 멤버십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제3자 적립 포인트 정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적법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9)의 법리, 201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의 경과, 그리고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의 엇갈린 해석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기존의 논의가 ‘포인트 사용이 에누리(할인)인가, 판매장려금(대가)인가’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매몰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016년 대법원 판결은 포인트의 본질을 ‘에누리’로 파악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후 정산하는 현대적 제휴 구조에 기계적으로 확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베이스의 침식(Tax Base Erosion)’과 ‘조세 중립성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쟁점의 본질을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 할인(현상)’이 아니라, 공급자가 정산 메커니즘을 통해 취득하는 ‘대가의 회수(본질)’로 재정의하였다.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포인트 차감액만큼 제3자로부터 금전적 보전이 이루어져 공급자가 통상의 공급가액을 온전히 회수한다면, 이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 ‘제3자에 의한 대가의 대위변제’와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2. 연구의 결론 : ‘대가회수성’ 중심의 기능적 해석론

이상의 분석과 규범적 평가를 통해 본 연구가 도출한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적용 범위의 한정’이 필요하다. 공급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기적립 포인트의 사용은 명백한 에누리이나, 제3자 보전이 결합된 거래에서는 그 정산금이 실질적인 대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전원합의체 법리를 모든 포인트 거래에 일반화하기보다는, 대가가 회수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분리 거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 2017년 개정 시행령은 ‘확인적 규정’으로서 규범적 정당성을 갖는다. 시행령 제61조의 ‘제3자 보전액 포함’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새로운 과세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가 예정한 ‘금전적 가치 있는 대가’의 범위를 구체적 거래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한 장치로 평가된다. 이는 거래단위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세부담 역전을 방지하

기 위한 필수적인 규범적 조치이다.

셋째, 과세 판단 기준은 가시성이 아닌 ‘대가회수성(Recoupment of Consideration)’이어야 한다. 현대의 복잡한 결제·정산 네트워크(Netting & Clearing) 속에서 개별 거래마다 보전 주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법원과 과세관청은 ‘통합정산’이라는 외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① 거래 연동성, ② 금액 대응성, ③ 반환 연동성 등을 종합하여, 결과적으로 공급자가 통상의 공급가액을 경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과세 논쟁의 해법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보다는,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바로 세우는 ‘해석론의 정립’에 방점을 둔다.

### 3.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제3자 적립 포인트 정산분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법적 차원에서는 향후 상고심 판결을 통해 전원합의체 법리의 적용 범위를 ‘대가 회수가 없는 순수 에누리’로 한정하고, 제3자 보전형 거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유통·카드 업계의 마일리지 과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2017년 개정 법령 하에서의 논의에 집중하였으므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그 법리에 따른 재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대상을 전통적인 포인트 제도로 한정하였다.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이코노미나 플랫폼 기업의 제휴 포인트 등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산 구조가 등장할 것이므로, 본 연구가 정립한 ‘대가회수성’의

법리를 새로운 디지털 자산 거래에 확장·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눈에 보이는 형식’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이 조화를 이룰 때 그 중립성이 확보된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능적 해석론이 향후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부가가치세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 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IV』, 2021.
- 권형기·이정환,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하여”, 『조세학술논집』 제39권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23.
- 길용원·신만중, “마일리지거래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와 법』 제9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2016.
- 박종우·윤태화,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제7권 제3호, 한국조세연구소, 2018.
- 이전오, “2016년 조세판례 회고”, 『조세논총』 제2권 제3호, 한국조세법학회, 2017.
- 이호섭·박 훈,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에 관한 소고”, 『조세와 법』 제13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2020.
- 정다운·홍성희·이성현, “제휴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21-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2. 국외 문헌

- OECD, *International VAT/GST Guidelines*, OECD Publishing, 2017.

### 3. 판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판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 헌재 1996. 3. 28. 선고 94헌바42 결정.
-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6853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7516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3누15045 판결.

<Abstract>

**A Study on the Inclusion of Settlement Payments  
for Third-Party Mileage in the Value Added Tax Base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wo Recent High Court Judgments —**

Park, Ae-ja\* & Kim, Soon-yong\*\*

This study examines the ongoing controversy regarding the inclusion of settlement payments for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in the Value Added Tax (VAT) base, even following the 2017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 Added Tax Act. In particular, it aims to elucidate the factors leading to the recent conflicting rulings by the Seoul High Court (2024Nu57516) and the Suwon High Court (2023Nu15045) on similar issues and to propose reasonable taxation criteria.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organize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tax base, discounts (Enuri), and considerations paid by third parti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It also diagnos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taxation logic from an interpretive perspective by perform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lower court rulings, focusing on the legal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s 2015Du58959 en banc decision and the 2017 amended legal system.

Departing from the conventional dichotomous debate of whether the payments constitute a “discount (Enuri)” or a “sales incentive (expense),” this study adopts the substantive perspective of “attribution and recoupment of consideration” as its analytical framework.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divergence in the two rulings stems not merely from differences in legal interpretation, but from factual disparities regarding the “entity bearing the cost” and the “directness of settlement” within the transaction structure.

---

\* Primary author :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Certified Tax Accountant

\*\* Co-author : Associate Professor, Pyeongtaek University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functional criteria to determine “recoupability of consideration” — namely, (1) Linkage, (2) Correspondence, and (3) Refundability — to ensure effective application within modern complex settlement network environments, rather than relying on formal settlement appearances. Furthermore, by arguing that the 2017 amended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interpreted as a “Confirmative Regulation” that concretizes the comprehensive tax base concept of the parent Act rather than creating a new object of taxation, this study seeks a reasonable interpretive approach that harmonizes tax neutrality with taxpayer predictability.

▶ **Key Words** : value added tax (VAT), tax base, mileage, rebate (enuri), third-party compensation, recoupment of consideration, confirmative regulation

